

審 查 報 告 書

1994. 11. 30.

산 업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년 11월 28일 속초시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11월 28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94. 11. 30)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 제안이유

- '95. 1. 1부터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현행 정액부과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 주민 스스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배출토록 유도하여 쓰레기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적정한 배출방법 명시(안제4조)
- 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공급 및 판매방법을 규정함(안 제6, 7, 8조)
-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판매자 준수사항, 판매소 취소사항등을 명시함(안 제9, 10, 11조)
- 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과 최종처리수수료액 및 쓰레기 봉투가격의 결정(안 제12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없 음

4. 質疑 및 答辯要旨

(답변자 : 환경보호과장 업무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6조 제2항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분해성에 대한 실험결과 확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가 있는가?	○ 정부에서 실험결과 확증할 수 있는 검증자료 없음
○ 제8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에서 일정율에 대한 명문규정 삽입에 대한 의견은?	○ 일정비율의 기준은 환경청 준칙상 제작비의 9%를 판매 이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일정비율의 산출기초는 <u>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 시자립도 × 판매이율 9%</u>로 결정. 그러나, 일정비율에 대하여는 규칙에 삽입하겠음.

5. 討論 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11월 30일 산업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추가

다. 수정 주요골자

-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에서 제2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를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별표 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에서 제2항중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를 “폴리에틸렌으로”로 자구를 각각 수정
· 추가

7.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음

첨 부 : 1.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束草市一般廢棄物의排出方法 및 手數料等의賦課徵收에關한條例案
에對한修正案

1994. 11. 30.

산 업 위 원 회

1. 修正理由

문맥과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추가

2. 修正主要骨子

-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에서 제2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를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을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별표 2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 재질등) 에서 제2항중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를 "폴리에틸렌으로"로 자구를 각각 수정
· 추가

수 정 안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 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① (원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u>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u>		②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 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 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생략)		① (원안과 같음)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u>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u>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② 폴리에틸렌으로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건축잔재물’이라 함은 건물의 신축, 철거 또는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 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생분해성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3과 같다.

제7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속초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속초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금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관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이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

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이하 '판매소' 라 한다) 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 봉투판매업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 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 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 부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제11조 (판매소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제12조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건축잔재물등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으로, 다량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의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한다.

제13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 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 및 처리비 징수) ①시장은 속초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속초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업체별 쓰레기수거량에 의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쓰레기수거량의 산출은 입방미터 단위의 부피로 계산하며, 계량하여 산출할 경우 환산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시 별표6 및 별표7에 의한 매립장 사용료를 시장의 고지에 의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속초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대형폐기물품목 및수수료

품 명	규 격	수 수 료 (원)
냉 장 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8,000 6,000 4,000
텔 레 비 전	25인치 이상 12인치 이상	5,000 3,000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000
에 어 콘	업소용 수직 입형 벽면 부착용	8,000 5,000
가스 오븐 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모 든 규 격	2,000
장 농	120Cm장 1쪽 90Cm장 1쪽	15,000 10,000
소 과	대형 (2인용 이상) 소형 (1인용)	5,000 2,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피 아 노	그 랜 드 어프라이트	15,000 10,000
보 일 러 통	대 중 소 형 형	8,000 5,000 3,000
캐 비 넷	모 든 규 격	4,000
침 대	2 인 용 1 인 용	8,000 5,000
폐 타 이 어	대형 (size 20이상) 중형 (size 16-19) 소형 (size 15까지)	6,000 4,000 2,000
기 타 폐기물 (부피로 환산 적용)	0.5 m ³ 미만 0.5 m ³ - 1 m ³ 1 m ³ 초과 0.5m ³ 마다	2,000 4,000 2,000

비고 : 상기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깁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4. 고철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 (ℓ)	봉투규격 (가로X세로)	호 칭 두께
일 반 용	10	33 X 40 cm	0.020 mm
일 반 용	20	41 X 49 cm	0.025 mm
공공용, 일반용	50	56 X 67 cm	0.030 mm
공공용, 일반용	100	71 X 85 cm	0.040 mm

비 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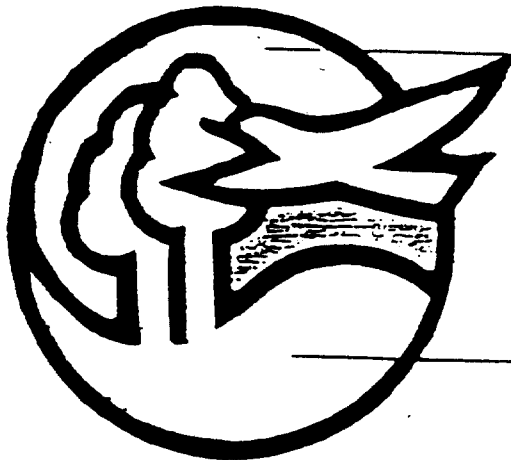
○ 여분길이 산정방법 :
$$\frac{\text{가로길이 (cm)}}{\pi} \times 5\text{cm}$$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속 초 시 문 장 쓰레기봉투 (ℓ) 일 반 용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속초시장 연락처 : 속초시 환경보호과 (전화 : 3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속 초 시 문 장 쓰레기봉투 (ℓ) 공 공 용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장 연락처 : 속초시 환경보호과 (전화: 3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8조 관련)



청 색 DIC : 137

녹 색 DIC : 137

쓰 레 기 봉 투 판 매 소

- 비 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137)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건축 잔재물등의 처리 수수료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매립장사용료
건축잔재물 (콘크리트, 목재, 철재, 석재, 토사류등 건축·토목공사에 수반되는 폐기물)	톤	13,000 (16,000)	7,800 (7,800)	5,200 (8,200)
수산물가공 잔재물 (생선내장류, 수산물 찌꺼기, 폐수처리오니등)	톤	57,800	7,800	50,000

- 비고: 1. 건축잔재물중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 토사류는 수수료에서 제외하며
기타 건축잔재물은 1톤 초과시에는 100Kg당 520원의 매립장 사용료를 가산한다.
2. ()의 금액은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시 가연성과 비가연성으로 미분류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7]

다량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대 상	기 준	처 리 수 수 료 (원)		
		계	수집·운반비	매립장사용료
다량 일반 폐기물	m³ 당	10,000	6,000	4,000

- 비고 : 처리수수료중 수집·운반비는 속초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6조에 의한
처리업체와 수집여건에 따라 상호계약에 의하여 정할수도 있다.

[별표 8]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가격

(단 위 : 원)

용 량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소비자 판매 가격
10 ℓ	93	100
20 ℓ	186	200
50 ℓ	465	500
100 ℓ	930	1,000